

대구서부지사 중대재해 사례 (2018.01.26.)

본 사례는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서 동종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작·배포하오니 동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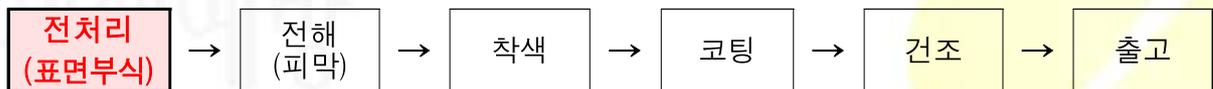
전용이송장치와 애칭(표면부식)조 사이에 끼임

< 재해개요 >

피막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피재자가 전처리공정 통로에서 작동 중인 피막소재 전용이송장치의 행거와 피막 전처리공정 애칭(표면부식)조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재해임.

1. 재해발생공정 및 재해발생상황

○ 재해발생공정



- 알루미늄 피막·코팅을 위한 전처리 공정으로 애칭조에서 가성소다로 표면 부식을 하는 공정임.

○ 재해발생상황

- 전용이송장치 운전원인 피재자가 전처리공정 통로에서 작동중인 전용이송장치 행거와 애칭(표면부식)조 사이에 끼임.

※ 피재자가 재해발생위치인 통로로 간 사유는 불명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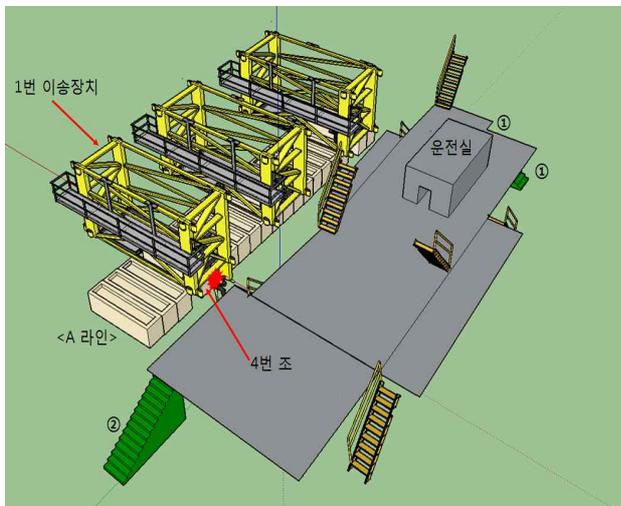


그림-1. 피막작업장



그림-2. 재해발생 상황도

2. 재해발생원인

○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미실시

- 사업주는 공작기계·수송기계·건설기계 등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미실시함.

○ 근로자용 안전통로 부적정

- 사업주는 작업장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
-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.

3. 재발방지 대책

○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

- 사업주는 공작기계·수송기계·건설기계 등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.

○ 근로자용 안전통로 확보

-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방호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장치 이동공간과 구분된 근로자용 안전통로를 확보하거나, 안전통로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가 통행할 수 없도록 통로를 폐쇄하시기 바랍니다.
- 워크바 위치조정, 수조밸브조작, 점검 또는 청소 등의 작업을 위한 출입시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에는 전기적 연동장치 등을 설치하여 문을 열면 이송장치 등의 운전이 정지되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※ 운전실에서 이송장치가 이동하는 경로 상의 모든 작업장소, 통로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장치를 운전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.